

2010. 3. 29.

조례안 심사 보고서

- [1] 충주시 농자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안건명 | 제안일자 | 회부일자 | 상정일자 | 의결일자 | 제안설명 | 비고 |
|-----------------------------|-------------|-------------|-------------|-------------|------|----|
|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010. 3.16. | 2010. 3.17. | 2010. 3.23. | 2010. 3.23. | 농정과장 | |
|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010. 3.16. | 2010. 3.17. | 2010. 3.23. | 2010. 3.23. | 축산과장 | |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상위법령인 「농지법」 제44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②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내수면어업에 관한 분쟁, 허가의 우선순위, 어업보상 등에 관한 주요 현안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1]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

[2]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가. 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어업허가 정수 조정
4. 수산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

나. 협의회의 구성(안 제3조)

1.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내수면 어업인으로 구성

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안 제4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 가능

라. 협의회의 회의(안 제7조)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부의안건을 배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 배부 가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 조례안은 「농지법」(제44조)¹⁾ 이 지난 해 5월 개정 공포되고 11월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우리 시의 농지관리위원회는 지난 1990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4개 위원회에 위원은 378명임(2010년 3월 현재)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를 위해서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폐지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직접 확인 처리함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농지전용에 대한 처리 일정이 상당히 당겨질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 편의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②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²⁾

1) 제44조 삭제 <2009.5.27>

舊)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에 그 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어업의 면허, 허가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4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주례안 주요 내용

제2조에서는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 및 어업의 면허·허가에 있어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의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하였음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나.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우선순위)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충북도내 단양, 괴산 등 4개 시군에서도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향후 충주시 관내 내수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질의 답변 없음

②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 질의 : 낚시터도 이 조례와 관련이 되는지?

답변 : 해당됨

(2) 질의 : 어업과 낚시터가 양도양수가 되는지?

답변 : 가능함

(3) 질의 : 수자원공사와의 수면사용 동의와 관계는?

답변 : 허가건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건에 미치지 않아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① 충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②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